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《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》 등 4부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**  (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)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 1. <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>에 대한 개정 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3조로 한다. 즉, “외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6조, 제10조, 제20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.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비준하여 반포한다.”  2. <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>에 대한 개정 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15조로 한다. 즉, “합영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3조, 제13조,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.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비준하여 반포한다.”  3. <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>에 대한 개정 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5조로 한다. 즉, “합작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2조 2항, 제2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.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비준하여 반포한다.”  4. <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>에 대한 개정 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14조로 한다. 즉, “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변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. 국가에서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비준하여 반포한다.”  이 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결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<중국(상해)자유무역시범구에서 관련법률이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임시조정하도록 국무원에 수권하는 것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>, 2014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한 <중국(광동)자유무역시범구, 중국(천진)자유무역시범구, 중국(복건)자유무역시범구 및 중국(상해)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에서 관련법률이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임시조정하도록 국무원에 수권하는 것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>의 효력은 동일자로 종료된다.  <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>, <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>, <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>, <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>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. |  | **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《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》等四部法律的决定**  （2016年9月3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通过）  　　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决定：  　　一、对《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》作出修改  增加一条，作为第二十三条：“举办外资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，对本法第六条、第十条、第二十条规定的审批事项，适用备案管理。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。”  　　二、对《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》作出修改  　　增加一条，作为第十五条：“举办合营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，对本法第三条、第十三条、第十四条规定的审批事项，适用备案管理。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。”  　　三、对《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》作出修改  　　增加一条，作为第二十五条：“举办合作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，对本法第五条、第七条、第十条、第十二条第二款、第二十四条规定的审批事项，适用备案管理。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。”  　　四、对《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》作出修改  　　增加一条，作为第十四条：“举办台湾同胞投资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，对本法第八条第一款规定的审批事项，适用备案管理。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。”  　　本决定自2016年10月1日起施行。自本决定施行之日起，2013年8月30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通过的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（上海）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》、2014年12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二次会议通过的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（广东）自由贸易试验区、中国（天津）自由贸易试验区、中国（福建）自由贸易试验区以及中国（上海）自由贸易试验区扩展区域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》的效力相应终止。  　　《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》、《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》、《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》、《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》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，重新公布。 |